

〈논문〉

## 기본소득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 근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검토 - \*

이 다 혜\*\*

### 요약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가 자산심사와 근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을 그 개념 요소로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함께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주목받고 있어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에 대해 다소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하여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기존 노동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우려하는 입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이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월 수 있음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이 노동법에 대해 제공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은 첫째,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현존하는 근로권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해 주며, 둘째,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임금노동에 편중된 현재의 노동체제를 재편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셋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근로 형태와 그에 따

\* 본 논문은 필자가 참여한 고용노동부의 2018년 「경제산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연구: 사회정의의 법률적 표상」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작성한 글을 보완,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노동연구원 박세성 박사님을 비롯하여 토론을 통해 생각을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동 연구진과, 특히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상세히 면서도 심도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1학기에 기본소득을 주제로 함께 고민했던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강생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kerith@snu.ac.kr).

른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또한 일과 삶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근로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이 상정하는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요청된다.

주제어: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근로권, 생존권적 기본권, 플랫폼 노동, 돌봄노동

## I. 문제의식: 4차 산업혁명, 노동 없는 미래, 기본소득론의 대두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선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 등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대체되어 고용이 더욱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다수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Frey & Osborne(2013) 보고서에서는 20년 내로 미국 일자리의 47%가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노동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sup>1)</sup>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며,<sup>2)</sup> 디지털 기술혁신과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의 예측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미래를 단정짓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결과로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연구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sup> 이러한

1) Frey, C.B. & Osborne, M.A.,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i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114 (2017).

2)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클라우드 슈밥이 독일의 ‘Industrie 4.0’에 착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을 계기로 널리 확산되었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실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론이 다수 제기되었다. 예컨대 제레미 리프킨(J. Rifkin)의 경우 여전히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클라우드 슈밥(송경진 역),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김석관, “두 개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선택”, 『한국형 노동 4.0. 포럼』 발표자료(2018).

3) 디지털 기술전환으로 인해 중산층 일자리 감소, 고용의 양극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연구들로 Acemoglu, D. & Autor, D.,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NBER Working Paper Series 16082,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0); Salvatori, A., “The Anatomy of Job Polarization in the UK”, Discussion Paper Series no. 9193, Bonn, IZA (2015) 등 다수가 있다.

전망은 현존하는 노동 체제에 대해 중대한 질문을 던질 계기를 마련해 준다.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근로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만일 현재의 일자리가 기술로 상당부분 대체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도래할 변화라면 과연 그러한 권리 보장 방식은 유효한 것인가? 근로 기회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사회에 대비하여 소득 보장과 생존권을 도모할 대안적인 방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기본소득(basic income)이 현재의 불평등, 양극화 등 경제 사회적 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 등 정치공동체가 자산심사와 근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그 주요 개념 요소로 한다.<sup>4)</sup> 지난 수년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찬반론을 넘어 실행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에는 여러 복합적인 동기가 있지만, 본 논문은 기본소득이 현재 노동 체제에서의 부정의를 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권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이를 통해 얻는 임금소득을 생계 유지의 일차적 방편으로 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근로의 기회는 헌법상 기본권 혹은 노동관계법령상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32조에서 근로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렇듯 근로의 기회가 하나의 권리로서 확립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온 바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기존의 신분질서는 무너져 갔지만, 노동을 통해 생존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턱없이 적은 보수와 가혹한 근로조건이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었기에 개인의 생존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은 정

4)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7, 43면;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홍기빈 역),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위한 거대한 전환**, 흐름출판(2017), 14면. 기본소득에 대한 개괄적인 기초 지식은 본 논문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는 않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다. [http://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http://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2019. 3. 4. 최종확인). 기본소득의 금액 수준은 과연 얼마만큼이 되어야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 판 파레이스를 비롯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GDP의 25% 정도를 적정선으로 제안하고, 시행국의 물가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판 파레이스, 앞의 책, 35면).

의롭지 못하다는 관념이 확산되어 갔다. 더 이상 자본가의 선의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일자리와 물질적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19 세기를 압도했던 사회정의의 관념이었고,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문화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시작으로 이러한 정의 관념이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sup>5)</sup>라는 근로권 개념이 최초로 성문화된 지 백 년을 맞이한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글로벌 경제 및 각국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sup>6)</sup> 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표준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사람들보다 비정규 노동 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훨씬 많아지고, 이들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 상태가 일반화되어 이제 ‘프레카리아트’(precarariat)라는 하나의 계급으로까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sup>7)</sup>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실업, 고령 빈곤, 일과 삶 양립의 어려움, 일터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을 비롯한 노동 문제들이 심각하며,<sup>8)</sup> 고용 형태, 소득수준, 사회보장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안정 노동에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5%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sup>9)</sup> 이러한 어려움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회자되는 최근의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에서의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이 노동 영역에서의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탐색하며, 특히 근로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갖는

5) 바이마르 헌법 제163조 제2항. (“Jedem Deutschen soll die Möglichkeit gegeben werden, durch wirtschaftliche Arbeit seinen Unterhalt zu erwerben.”)

6) 조셉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열린책들(2013); Joseph Stiglitz, “The Global Crisis, Social Protection and Job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8 (2009) 등 참조.

7) 가이 스탠딩(김태호 역),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박종철출판사(2014).

8) 전병유, **한국의 불평등 2016**, 페이퍼로드(2016).

9) 김교성 외, 위 의 책(2017), 82면.

10) 같은 취지로, 이철수·이다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2017) 참조.

법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기본소득론은 근로의 기회를 중심으로 생존권 보장을 도모한다는 기존의 근로권 관념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노동 없는 미래’가 회자되는 현재 완전고용은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근로권 개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만일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우리의 노동 생활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노동법제는 여기에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기본소득에 대해서 해외 일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기본소득의 개념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제도가 실정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sup>11)</sup> 그러나 정치적 합의, 재정 확보 등 다양한 현실적 이유로 인해 즉시 도입은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소득론을 통해 현재의 노동에 대해 성찰하고 헌법과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더 정의로운 방식으로 노동권의 규범 구조를 재정립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법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본소득이라는 구상이 아직 실정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구상이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다수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면 이를 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국제인권규범 및 우리 헌법 해석론에서의 근로권 실현 구조를 살펴본 뒤 그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II).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를 탐색하며, 기본소득이 현재의 노동 체제에 어떠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III).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노동에서 실질적 자유가 더 잘 구현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 논하고(IV),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현재 노동에서의 부정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는 구상이므로 입법화될 필요성을 제안하며 끝맺는다(V).

11) 기본소득과 유사한 실험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국가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알래스카, 핀란드 등의 사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정희,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월간 복지동향**, 제221호(2017) 참조.

## II. 근로권의 법적 실현구조와 그 한계

### 1.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근로권

#### 1) 국제인권규범에서의 근로권 개념<sup>12)</sup>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과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며, 동조 제3항은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자신 및 가족구성원의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유리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생존의 방편으로서 고용을 통한 임금노동을 최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1966년 사회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의 제6조에서도 근로권을 확인하고 있는데, 근로권을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얻을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이러한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의 의무로서 자국 국민이 근로의 기회를 얻고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을 위해 기술, 직업 등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sup>13)</sup> 제7조에서는 근로자들이 ‘품위있는 생활’(decent living)을 보장받을 권리를 언급한다.<sup>14)</sup>

12) 근로권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의 기초적 내용은 이다혜, “국제규범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북한에 대한 적용”,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연구 제6권(2017)에 필자가 집필한 부분의 일부를 요약하여 인용함.

13) 사회권규약 제6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얻을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꾸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및 직업적 지도, 훈련 프로그램,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사회권규약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remuneration): (i) 공정한 임금(fair wage)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decent living) [이하 생략]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8호(General Comments No. 18)에 의하면, 근로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강요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을 자유로이 수락 및 선택할 권리, 고용보호 제도에 대한 접근권 및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sup>15)</sup> 여기에서의 노동은 반드시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이어야 한다. 양질의 노동은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이며, 산업안전과 보수 수준에 있어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사회권규약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 본인과 가족구성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함은 물론,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온전성이 존중받아야 양질의 노동이 구현되는 것이다.<sup>16)</sup>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회권위원회는 강제적 혹은 비자발적인 요소가 있는 노동은 결코 양질의 노동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강제노동의 철폐는 1998년 『ILO 노동기본권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4대 영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sup>17)</sup> ILO 강제노동협약(C29)에 의하면, 강제노동은 “불이익의 위협 하에 수행된 모든 형태의 자발적이지 않은 노무 또는 서비스”로 정의된다.<sup>18)</sup>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예로 군복무, 아동노동, 여권을 압수당해 사용자를 떠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 등 극단적인 억압 하에서 행해지는 노동이 언급되며, 이러한 경우는 대개 명백히 최저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불안정노동이 상시화된 현재, 강제노동에 대응하고 또한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부자유노동’(unfree labour)도 제안되고 있다.<sup>19)</sup> 최저기준을 위반한 명백한 강제노동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마지못해 수락하는 자유롭지 못한 노동이 있는 것이다. ‘부자유노동’은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비자발적인 요소가 있는 한 결코 양질의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sup>15)</sup> CESCR, General Comment No. 18, para. 6.

<sup>16)</sup> CESCR, General Comment No. 18, para. 6., para. 7.

<sup>17)</sup>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

<sup>18)</sup>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No. 29 (1930) Art. 2. Sec.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sup>19)</sup> Judy Fudge, Kendra Strauss, *Temporary Work, Agencies and Unfree Labour: Insecurity in the New World of Work*, Routledge (2013)의 논의 참조.

## 2) 근로의 기회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

사회권위원회에 의하면, 근로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사람이 근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비공식경제 (informal economy)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업률이 높거나 안정된 고용이 부재하면 근로자들은 결국 비공식경제 부문에서 취업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근로의 기회, 즉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는 취약한 집단을 포함한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sup>20)</sup>

사회권규약은 근로권 보장을 위해 국가에 대해 두 가지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국가가 노동시장을 정비하고 비공식경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의무, 둘째로 취약 집단에게도 노동시장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로권 실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는 측면이 발견된다. 정부는 국제규범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사적 주체가 행위자로 동참하는 경제의 모든 측면을 원활히 기능하게 할 능력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권규약에 의하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근로 기회는 국가의 경제정책 및 그 고용창출 능력에 맡겨져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취하고 있는 한 국가가 노동시장의 모든 측면을 다룰 수 없다. 게다가 근로권을 이렇듯 당사국의 능력에 위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어느 나라에 태어난 국민인지에 따라 근로권 향유의 가능성과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메타-부정의’(meta-injustice)의 문제가 발생한다.<sup>21)</sup>

## 3)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근로권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사회권규약 제7조에서 말하는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이다.<sup>22)</sup> 사회권위원회는 2016년 일반논평 제23호(General

20) 일반논평 제18호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출생,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건강상태, 성적 지향, 시민적, 정치적 및 사회적 또는 기타 신분에서 근거한 어떠한 고용상 차별도 금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 고용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에도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과 혜택받지 못한 개인, 주변화된 개인과 집단 등을 위해 경제적 자원과 기술 및 직업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CESCR, General Comment, No. 18, para. 12, (b)(i), *Ibid.*, para. 44.

21) 낸시 프레이저(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2010)의 논의 참조.

22) 사회권규약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



Comments No. 23)에서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의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sup>23)</sup> 이러한 취지는 저성장 기조가 상시화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균열일터(fissured workplace)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된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표준고용관계가 침식되며 비정규 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노동 보호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인 임금에 대해서 사회권규약 7(a)는 “보수”의 의미가 임금 또는 봉급에 국한되지 않으며,<sup>25)</sup>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현금 및 현물을 의미하며 그 액수 또는 분량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sup>26)</sup> 보수의 지급에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구성원이 품위 있는 삶(decent living)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sup>27)</sup> 여기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보수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일지가 문제된다. 사회권위원회는 규약상의 다른 권리들을 향유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구성원이 비로소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sup>28)</sup>

---

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remuneration): (i) 공정한 임금(fair wage)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decent living) [이하 생략]

23) 일반논평 제23호(2016)는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의 권리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전통적으로 차별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은 물론이지만,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자, 자영업자, 농업분야 종사자 및 난민 등에게도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4) David Weil, *The Fissured Workplace: Why Work Became So Bad for So Many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i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의 논의 참조.

25) CESCR, General Comment No. 23, para. 9.

26) *Ibid.*, para. 7.

27) *Ibid.*, para. 9.

28) 사회권위원회는 임금 수준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해당 국가의 물가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되, 품위 있는 삶의 지표는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여타의 권리들(사회보장, 건강, 교육, 음식과 식수, 위생, 주거와 의복, 일터로의 통근비용 등)이 확보되어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Ibid.*, para. 11, 1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제인권규범이 상정하는 근로권은 모든 사람이 근로의 기회 및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명목적인 근로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근로의 내용이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일 것이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구성원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를 받을 때 비로소 근로권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권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을 정비하고 완전고용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등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예정하고 있다.

## 2. 헌법상 근로권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

한편,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며,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권을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sup>29)</sup>

헌법의 근로권에 대한 이러한 규율방식을 볼 때, 근로권의 실제적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근로 기회에 대한 권리이다. 둘째는 헌법 제32조에 명문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국민이 근로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해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생계유지 청구권’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 163조의 경우 국민이 일할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 대해 생계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우리 헌법 제32조는 생계유지청구권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제1항 후문에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와, 최저임금 시행 의무를 언급할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근로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판시하여,<sup>30)</sup> 근로권의 하위 범주로서 생계유지청구권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먼저 생계유지청구권은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

29)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판례집 20-2상, 556.

30)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판례집 14-2, 668.

다는 입장으로, 기업에게 고용을 직접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는 고용 창출이 원활하도록 노동시장을 정비한다면 일차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고, 다만 실업자는 국가를 상대로 근로 기회에 관한 정책이나 입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sup>31)</sup> 그러나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과거의 소극적 자유방임으로부터 현재는 적극적 보호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계유지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sup>32)</sup> 이러한 견해를 취하면 헌법 제32조에서 생계유지청구권을 명문으로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고용보험법을 두고 있으며, 실업 발생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생계유지청구권이며 이는 결국 헌법상 근로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sup>33)</sup>

헌법재판소는 근로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연수제를 위헌으로 본 결정에서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는 이분론을 제시한 바 있다.<sup>34)</sup> 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35)</sup>

### 3. 근로권의 현실적 및 해석론적 한계

이러한 근로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재의 근로권 구현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 고용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제시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

31) 임종률, **노동법** [제15판], 박영사(2017), 18면.

32) 한인상,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 제36호(2014), 87면.

33) 한인상, 위의 논문, 92면.

34)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5) 이러한 ‘일할 자리’와 ‘일할 환경’ 이분론에 따랐을 때 그러한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령들을 살펴보면 ‘일할 자리’에 대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청구권,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여성고령자, 장애인 등의 고용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이 있다. ‘일할 환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근로 환경과 보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법정 최저기준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최저임금법상의 권리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인상, 위의 논문, 95-96면 참조.

회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비롯되는 한계이다. 20세기 중반, 특히 세계대전 직후 역사적으로 ‘영광의 30년’(1940-1970년대)으로 표현되는 경제 고성장기에는 기업의 높은 고용률과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보장, 근로자 지위와 연동된 사회보장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었으나,<sup>36)</sup> 1970년대 이후 노동보호보다 노동 유연성이 강조되고 비정규 형태의 근로가 확산되어 국가가 나서서 양질의 노동이 담보되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로권 실현의 ‘구조적 장애’로 표현하기도 한다.<sup>37)</sup> 근로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요청인데,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사적 주체인 기업에게 맡겨져 있다면 완전고용이 어려운 산업구조 하에서 근로권 보장은 구조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둘째, 근로권의 목표인 ‘완전고용’에 집착할 경우, 고용기회 확대를 핑계 삼아 오히려 일정한 범위에서 노동권 구현을 제약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사회권규약은 제7조에서 “생산적인 완전고용”(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도 근로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근로기회 보장, 즉 완전고용을 목표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8)</sup> 그런데 고용의 실제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숫자로 표현되는 취업률 향상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규범적으로는 노동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모순을 가져오기도 한다. 독일의 정치경제학자인 Offe(2008)는 완전고용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근로권이 ‘투자-성장-고용-분배’라는 일련의 흐름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러한 믿음은 항상 진실에 대한 검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실에서 고용 결과가 좋지 못하면 언제든지 첫 번째 변수인 ‘투자’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노동 및 사회보장 정책은 축소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sup>39)</sup> 완전고용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기업이

36) 이다혜, “비스마르크와의 기나긴 작별? - 유럽 복지개혁의 정치학, 그리고 한국 사회보장의 현주소에 대한 단상”, *사회보장법연구*, 제2호(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의 논의 참조.

37) 전광석, 위의 책, 448면.

38) 임종률, 위의 책, 18면.

39) C. Offe, “Basic Income and the Labour Contract”, *Basic Income Studies*, Vol. 3, Issue 1 (2008), pp.19-20.

잘 되어야 근로자도 잘 된다”라며 근로자들의 노동권보다,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의 소위 ‘경영권’을 더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인식하는 법원의 태도에서도 발견된다. 고용 창출을 명목으로 노동권 행사를 제약하는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sup>40)</sup>

셋째, 근로권의 내용을 ‘일할 자리’와 ‘일할 환경’으로 분리하여 후자는 자유권적 성격을 갖지만, 전자는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접근 방식을 취하면 결국 근로권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로권에 있어 자유권-사회권 이분론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입장은 “자유권과는 달리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재정적 뒷받침도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실현이 곤란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특히 근로 기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한다.<sup>41)</sup> 그러나 자유권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회권 구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명제에는 사실 뚜렷한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반론이 마련되어 있다.<sup>42)</sup>

근본적으로, 일할 자리와 일할 환경을 분리된 것으로 여기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근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간신히 취업한다 한들 양질의 근로환경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의 기회와 환경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며, 두 가지를 분리한다면 그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분론을 제시했던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마470)에서 바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인에게 있어 ‘근로 환경’은 자유권이므로 보장할 수 있지만 ‘근로 기회’는 국민에게만 적용 가능한 사회권이므로 보장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수년 뒤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외국인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약하는 법률 내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sup>43)</sup> 사업장 이동권은 외국인의 ‘일할 기회’

40)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기업이 잘 되어야 근로자도 잘 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법원의 소위 ‘경영권’ 논의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철수, 노동법의 신화 벗기기: 아! 경영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공개세미나 발표문, 2017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41) 차진아, “헌법상 근로권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와 대안의 모색 -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2010), 112면.

42) 통념과는 달리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 집행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사회권 구현을 위해서 항상 국가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논문으로, 이주영,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2호(2016), 133-134면의 논의 참조.

4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판례집 23-2상, 623).

에 해당하며, 일할 기회는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에 대해 이를 특정한 횟수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권리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사업장 이동권을 제한할 경우, 특정 사업장에서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결국 ‘일할 환경’도 열악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sup>44)</sup>

‘일할 자리’와 ‘일할 환경’을 분리할 경우 양질의 노동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은 외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다수에게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형태의 비정규 노동을 도맡은 근로자들(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 파견과 하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근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은 근로 기회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나 임금 수준에서의 불리함은 물론이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심지어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더 위험한 근로환경으로 유입되어 산업재해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45)</sup>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현존하는 근로권 관념은 그 실현에 있어 국가가 주도하기 쉽지 않고 상당부분 기업에 맡겨져 있다는 점, 완전고용이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인해 오히려 노동 유연화를 정당화하는 법과 정책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근로 기회에 있어 ‘일할 자리’가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해석론 때문에 일할 자리에 대한 적극적 보장을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양질의 노동을 고수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의 근로권은 고용에 대해 형식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양질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본질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6)</sup> 따라서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를 규명해 보면서, 근로권이 진정한 의미에서 양질의 노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검토 내지는 재정립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4)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의 논의 참조.

45) 2015년 기준, 하청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2016).

46) 헌법이 상정하는 근로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로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권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양승광,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노동법연구**, 제44호(2018), 205-207면의 논의 참조.

### III. 기본소득과 노동의 상호 관계

위에서 살펴본 근로권의 구조적 한계를 계기 삼아, 이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며 기본소득을 통해 가능해지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논한다. 기본소득이 제공해주는 화두들이 우리의 일과 근로권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노동 영역보다는 주로 복지학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기본소득과 복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기본소득이 현금을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보장의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다고 보며, 기존 제도들과의 관계와 양립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sup>47)</sup> 그런데 사회보장은 그 작동 방식에 있어 질병, 노령, 실업 등 개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 발생했을 때 등장한다.<sup>48)</sup> 현행법은 일차적으로 임금노동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하고, 노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이행한다. 특히 사회보험제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상의 형식으로 근로자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을 그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를 정면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더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소득원이라는 점 때문에 기본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한다거나, 혹은 일할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존하는 노동법 체계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발견된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전반적으로 노동권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47) 강남훈·곽노완 외,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박종철출판사(2014)의 논의 참조.

48)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1. 기본소득과 근로 의무

### 1) 기본소득의 근로 의무에 대한 입장

기본소득의 개념 요소 중 가장 치열한 논란 및 반대론자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지점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에 대한 것이다. ‘무조건성’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소득의 무조건성이다. 기본소득을 받는 자가 현재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자산조사(means-test) 없이 주어지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존의 사회부조 제도처럼 급여를 받기 위해 인격적 굴욕을 감수해 가며 본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빈곤층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둘째, 지출의 무조건성이다. 기본소득으로 받을 금액을 어떻게 소비하고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으로 주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될 수 있으며, 특정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현물이나 바우처로 주어지는 것은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행위의 무조건성이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sup>49)</sup>

기본소득의 이러한 무조건성의 세 번째 차원, 즉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주어진다라는 점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념으로 여겨지는 근로 의무와는 배치된다. 이 점을 우려하는 논자들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근거로 기본소득을 비판한다. 첫째, 기본소득이 근로 요구 없이 주어지므로 만일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행한다면 사람들이 취업을 회피하게 되고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둘째, 일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받는다는 것은 호혜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일하는 사람의 노동에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조장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염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반론을 전개한다. 먼저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이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심리적 반응일 뿐이며 기본소득과 유사한 실험을 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로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sup>50)</sup> 생계 유지

49) 가이 스탠딩(안효상 역),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비(2018), 22면.

50) K. Widerquist, “What (if anything) can we learn from the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 *Journal of Socio-Economics* 34(1), 2005. 캐나다의 ‘민컴’(mincome)실험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노동을 중단한 유일한 집단은 십대 청소년으로, 기존에



를 위해 마지못해 원치 않는 직종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노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sup>51)</sup> 둘째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일하지 않는 자들의 소위 ‘노동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가능하다. 현재의 노동 체제에서는 돌봄노동을 비공식 영역에 두고 있어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젠더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즉 남성이 여성의 돌봄노동에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이미 존재하며, 기본소득은 새로운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통해 돌봄노동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52)</sup>

정리하면,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소득이므로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노동이 더욱 정교하게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2) 헌법상 근로 의무에 대한 비판적 견해

그렇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할 때, 헌법상 국민의 근로 의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며,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 의무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만일 부분적으로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의무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먼저 근로 의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성격상 법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윤리적, 도덕적 의무일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53)</sup> 그러나 제한적이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 의무는 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주로 근로 의무가 근로권 및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되는 지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 의무는 국가가 노동의사 없

---

생계유지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취업했던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설령 기본소득을 계기로 노동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더 가치있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가이 스탠딩, 위의 책, 195면에서 재인용.

51) 스탠딩, 위의 책, 196면.

52) 이 점에 대해 이하 IV. 1.에서 자세히 논한다.

5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5), 707면.

는 자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입법상 지침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며,<sup>54)</sup> 예컨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에서 근로와 자활의 의사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근로 의무는 한정적으로 법적 성격을 갖는 의무라는 것이다.<sup>55)</sup>

그러나 이런 견해에는 두 가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고용보험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근거로 헌법상 근로 의무가 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는 것은 법체계상 선후가 맞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 최고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헌법상 근로 의무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이념, 맥락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통해 가려져야 할 문제이지, 법률 차원에서 근로 의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헌법의 근로 의무를 수궁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 근로 의무 관련 내용이 국제노동기준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sup>56)</sup>

둘째, 근로 의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사회보장에 있어 근로연계복지(workfare) 기조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오용될 수 있다. 사회보장은 모든 개인이 향유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근로 의사나 자활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하는 자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 있는 시민인 것처럼 취급되고, 여러 이유로 인해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의 공식적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57)</sup> 근로 의무는 헌법상 여타 권리와 정합성이 없고, 근로 의무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결국 사회보장에서 근로연계형 복지만이 정당화되고 기본소득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헌법상 근로 의무 조항은 삭제하는 편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sup>58)</sup>

54) 임종률, 위의 책, 20면.

55) 전광석, 위의 책, 459면.

56) ILO 강제노동협약(No. 29)은 “불이익의 위협 하에서 행해진 자발적이지 않은 모든 형태의 노동 및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에서 근로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철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57) 같은 취지로 문준혁,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제44호(2018), 234면 이하의 논의 참조. 노동과 시민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다혜, 시민권과 이주노동: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5), 73-90면의 논의 참조.

58) 금민, 기본소득 헌법개정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 2. 기본소득과 탈노동화, 그리고 실질적 자유

### 1) 기본소득과 ‘탈노동화’(de-labourization) 담론

기본소득이 근로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과 노동의 본질적인 관계, 혹은 기본소득이 현재의 노동 체제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이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는다는 면에서 기본소득은 ‘탈노동화’, 즉 노동으로부터의 이탈 내지는 분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탈노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4차 산업혁명 논의와 연결하여 미래에는 기계가 모든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상정한다. 대표적으로 Dunlop(2016)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보자:

“일 자체가 많은 문제의 근원이다. 극단적인 입장이지는 않지만 탈노동 접근방식에서는 ‘완전 실업’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인류가 번영하려면 사회의 생산적인 일은 거의 다 기술(로봇, 인공지능 등)에 떠넘기고 인간은 자유롭게 다른 활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노동 접근방식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지 않는 체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해야 하며, 또 완전히 자동화된 탈노동 경제(일자리 감소를 개선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제)로 옮겨가야 한다. 노동시장은 더 이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기본소득 제도가 한 가지 치유책일 수 있다. [중략]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예술과 교육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배우는데 큰 성취감을 느꼈으며, 사회와 정치참여에 몰두했고, 모든 노동은 노예들에게 맡겼다. 21세기 시민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모든 노동은 로봇들에게 맡기고 인간은 평등하게 생산적인 일을 하며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걸까?”<sup>59)</sup>

이와 같이 사람이 일하는 것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감내해야 하는 사실상의 의무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sup>60)</sup> 더 나아가 기본소득은 ‘일할 권리’(right to work)로부터 ‘일하지 않을 자유’(freedom from work)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도 제

(2017), 26면.

<sup>59)</sup> 팀 던롭, **노동 없는 미래**, 비즈니스맵(2016), 219면 이하의 논의 참조.

<sup>60)</sup> 데이비드 프레이인(장상미 역), **일하지 않을 권리: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반론**, 동녘(2017)의 논의 참조.

기된다.<sup>61)</sup>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결국 노동이라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과 구분되기 어렵다. 기본소득이 근로 요건 없이도 주어진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반드시 노동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소득을 탈노동 담론과 동일시하는 견해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박제성(2018)은 탈노동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인간의 구체적 노동은 결코 제거될 수 없으며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간의 실존과 삶의 총체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sup>62)</sup>

기본소득이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를 정립하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김교성 외(2017)에서는 기본소득이 상정하는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전면적 거부가 아니라, “착취에 기반한 임금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난 상태”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중활동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sup>63)</sup> 다중활동은 한나 아렌트가 제시했듯이 생존을 위한 노동(labor)뿐 아닌 작업(work)과 행위(action)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sup>64)</sup>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노동에 대한 입장은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극단적인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임금노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미 있는 다중활동에 종사할 폭넓은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 및 노동권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인 ‘실질적 자유’

기본소득이 넓은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를 지지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측면을 통해 결국 생존을 위한 노동의 경제적이며 물질적인 차원으로 돌아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립자인 정치철학자 판 파레

61) Nicolas Bueno, “Introduction to the Human Economy: From the Right to Work to Freedom from Work”, 33(4)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2018)의 논의 참조.

62) 박제성,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 도서출판 퍼플 (2018), 37-47면의 논의 참조.

63) 김교성 외, 위의 책, 170면.

64) 김교성 외, 위의 책, 170면;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아렌트는 노동과 작업을 “우리 신체의 노동과, 우리 손의 작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했고, 행위(action)에 대해서는 정치적, 참여적 의미를 부여했다. 번역은 한나 아렌트(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1996)에 따름.

이스(Philippe van Parijs)가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기본소득의 핵심 가치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for all)로 집약된다. 실질적 자유는, 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을 통한 소득을 얻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고, 일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의미의 자유로 정의된다.<sup>65)</sup>

임금노동의 가장 본질적인 어려움은 시장에서 본인의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그 대가로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고용한 타인에게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의 옹호론자들은 타인에게 종속되면 결코 실질적인 자유가 확보될 수 없으며,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억압과 차별, 즉 자본의 노동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배제된 평등한 사회에서만 개인은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66)</sup> 생존의 절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노동이라는 방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면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sup>67)</sup>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노동—즉 돌봄노동, 시민적 정치활동, 창의적인 예술 노동, 자원봉사 등 인간이 본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할 자유도 확보되는 것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기본소득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은 결국 ‘임금노동 중심적 근로권’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러한 재검토의 결과로, 임금노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임금노동을 초월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권을 재정립하지는 논지도 가능하다.

65) 필리페 판 파레이스(조현진 역),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후마니타스(2016); 김교성 외, 위의 책, 138-139면.

66) 김교성 외, 위의 책, 139면.

67) 물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실정법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질병, 노령, 장애 등 임금노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주로 개입하고, 기본소득은 특정한 형태의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의 생존을 물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의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국가의 결함을 보완하고, 사회보장의 한 범주로서 적합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견해로 서정희·조광자,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진보평론**, 제45호(2010)의 논의 참조.

### 3. 근로권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재조명: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지만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라면 현존하는 근로권과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할까? 기본소득은 일견 근로권과 친화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근로권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거나, 혹은 근로권의 존재가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의 구상은 일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무조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포섭을 위한 대응을 단념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개인의 고립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에 과부하를 가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sup>68)</sup>

그러나 기본소득과 근로권의 관계는 이렇듯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며,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근로권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은 노동의 교섭력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서 ‘나쁜 노동’을 거부하고, ‘좋은 노동’을 요구할 권리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근로권을 보완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69)</sup> 이와 관련하여 근로권의 초기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근로권과 관련된 초기 논의에서는 지금과 같이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고용의 결과로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여겨졌다.

오늘날 근로권 개념의 현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19세기의 오스트리아 법학자 A. Menger에 의하면, 본래 근로권보다 선행하여 추구되어야 할 권리는 ‘노동수익권’(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이다. 노동수익권은 근로

68) 노호창,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 **헌법논총**, 제28집(2017), 161면; 요시미 키쿠치,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Security Law in Japan”,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79면.

69) 기본소득이 노동의 교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개별적 근로관계뿐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이 노동을 통한 연대에 대해 더 무관심해지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더욱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의 예상도 가능하다. 불안정 노동이 상시화된 지금의 환경 속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은 노조에 관심이 없다가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의 목소리를 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용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조합활동을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R. B. Freeman & Joel Rogers, *What Workers Want*, Ithaca : ILR Pres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99)의 논의 참조).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일하지 않아도 약간의 수입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고용불안의 염려를 덜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더 자신있게 단결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자 본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창출한 모든 가치를 소유할 권리로 정의된다.<sup>70)</sup>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노동수익권을 실제로 향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에 의해 임의로 정해지는 적은 임금만을 받고 노동 결과물의 대부분은 자본가가 불로소득(uneared income)으로 취하게 된다. 당시 대두한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빈곤과 실업 등 사회 모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근로권의 초기 논의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근로권의 본질적 내용은 일할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통해 ‘생존’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의 기회보다 일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물질적 필요를 존중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였으며, 근로권은 소득보장 및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자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근로권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려 보면 근로권에서 고용의 기회가 핵심적인 것은 아니므로, 만일 고용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소득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과 근로권은 서로 배치되는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19세기 말의 정의 관념이었던 ‘노동수익권’의 이상을 현실에 가깝게 하기 위해 생존권을 고안하고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근로권이 제시되었다면, 인간의 생존과 존엄에 대한 절실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본소득론도 같은 취지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Menger는 원칙적으로 노동수익권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 이를 전면 시행한다면 사유재산이 부정되고 현존하는 재산법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하나의 법적 이상(ideal)으로 보았다. 이에 대신한 보완책으로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에 개입하여 국민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적 장치를 고민하게 된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이 ‘생존권’(right to subsistence)과 ‘근로권’(right to work)이며,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른다. Menger는 생존권은 노령,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권리로, 근로권은 일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국가에 취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각각 정의하였다.<sup>71)</sup>

70) Anton Menger의 노동수익권 개념에 대한 소개는 이철수·이다혜, “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 - 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과 19세기 사회적 기본권의 태동-”,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2012)의 논의 참조.

71) Anton Menger,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McMillan Press (1899).

근로권의 초기 관념과, 현재의 기본소득론을 비교·대조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표 1> 근로권 형성기와 기본소득론의 비교

	근로권의 형성 (19C 말)	기본소득론 (현재)
시정되어야 할 부정의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불모소득), 허구적 평등을 전제로 한 당시의 계약법, 법적 보호수단 부재.	고용 없는 성장, 실업의 증대와 불안정 노동, 생존을 위한 부자유노동(unfree work).
요청되는 새로운 정의의 내용	‘노동수익권’: 근로자는 본인의 노동에 대한 모든 수익을 가질 수 있어야 함.	노동에서의 ‘실질적 자유’: 나쁜 노동을 거부하면서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
실현 수단	추상적 권리 보장(생존권, 근로권)	물질적 금전 보장(기본소득)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기본소득이 노동에 대해 가져다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현재의 근로권 관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일과 근로권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근로권은 그 초기 형성 과정을 살펴볼 때 생존의 보장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일할 기회 자체를 물신화하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여기는 취지가 아니었다. 근로권의 본래적 성격은 생존권 구현을 위해 임금노동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근대 시민의 ‘노동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며,<sup>72)</sup> 기본소득은 근로권의 이러한 의미를 재조명하는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의 존재와 실행을 전제한 새로운 근로권은 근로 의무와 결부되지 않으며, 생존을 위한 소득이 반드시 임금노동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쁜 노동을 거부하고 양질의 노동을 선택할 자유를 보다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소득은 ‘노동에서의 실질적 자유’를 강화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에서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권을 재정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72) 본래 근로권에 시민적 자유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로 Hugh Collins, “Is There a Human Right to Work?”, V. Mantouvalou (ed.), *The Right to Work: Leg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Hart Publishing (2015), p.19 이하의 논의 참조.



#### IV. 기본소득을 통한 근로권의 재정립: 노동에서의 실질적 자유 보장

위에서 살펴본 기본소득과 노동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임금노동에서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는 현존하는 근로권 체계의 모순을 드러내어 이를 개선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임금노동권’에만 편중된 것이 아닌 ‘돌봄노동권’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기존의 산업자본주의에서 형성된 종속노동의 관념을 재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셋째, 기본소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이 아닌 ‘시간주권’, 혹은 ‘근로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1. 기본소득과 돌봄노동권: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 개선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어지므로 돌봄노동을 주로 전담하는 여성들에게도 공식적인 소득이 주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근로권이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 문제를 재조명할 수 있다.

###### 1) ‘그림자 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근로권은 완전고용을 그 전제이자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세기에 형성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주로 남성 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가 임금노동을, 배우자인 여성이 가사와 육아 등 돌봄노동을 전담하는 성별분업에 기반해 있다. 남성 근로자의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자연스레 여성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생계가 해결될 것으로 전제하였다.<sup>73)</sup> 이에 따라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표준고용관계는 1일 8시간의 전일제 노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에서 임금노동자가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돌봄의 필요를 시장에서 타인의 서비스 혹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의 영역으로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며, 더 중요하게는 암묵적으로 여성이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전적으로 가정에서 돌봄 역할만을 전담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sup>74)</sup>

<sup>73)</sup> Judy Fudge, “Labour as a Fictive Commodity: Radically Reconceptualizing Labour Law”, in G. Davidov & B. Langille (eds.), *The Idea of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의 논의 참조.

20세기 노동법의 법적 인간상은 가정에서 돌봄노동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노동력은 다른 재화와 달리 그 특성상 무한정 소모할 수 없고 반드시 재생산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임금노동이 원활히 기능하려면 돌봄노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돌봄의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법은 돌봄노동을 비공식 경제의 영역으로 방치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즉 돌봄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부차적인 ‘그림자 노동’(shadow work)으로 평가절하되어 왔고,<sup>75)</sup>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노동 전반에 대한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sup>76)</sup>

지금까지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에 대한 법적 대응은 주로 ‘여성의 남성화’ 방식에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식만이 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동 법의 목적에는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남성의 가사노동을 촉진”한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sup>77)</sup> 그러나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매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한 돌봄노동을 통해 발생하는 젠더 불평등 문제를 노동시장 영역에서만 시정하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제한된 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녀평등에 기여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계속적인 분절화 및 양극화를 초래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돌봄노동의 빈 공간은

74)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김현지·이영주 역), **집안의 노동자: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 갈무리**, 2017; 장지연,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제11권 제2호(2011)의 논의를 참조.

75) 이반 일리치(노승영 역), **그림자 노동**, 사월의책(2015).

76) 돌봄노동의 비공식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양산한다. 첫째로는 어떠한 직종에 근무하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여성 근로자들은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돌봄불이익’(care penalty)으로 인해 일터와 가정 양쪽에서 차별과 불리함을 겪게 되며, 둘째로 돌봄노동을 직업으로 수행하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법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배제되므로 계속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다혜,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확립에 관한 연구(2018)**의 논의를 참조.

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 [중략]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저숙련 여성들이 주로 전담하게 될 뿐이다.<sup>78)</sup> 이렇듯 현재의 노동법과 제도는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사이의 부정직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sup>79)</sup>

## 2) 젠더 불평등과 기본소득

그렇다면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더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임금노동 및 돌봄노동의 수행에 있어 ‘여성의 남성화’뿐 아니라 ‘남성의 여성화’가 가능해지는 것, 즉 돌봄노동을 남녀 모두가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가 동등하게 임금노동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돌봄노동에 대한 성역할 구분이 잔존하는 한 실질적 평등은 달성되기 어렵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예측이 공존한다.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돌봄노동을 주로 수행하던 여성, 예컨대 전업주부가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임금노동을 추구할 동기가 감소하여 가정에 남아있게 되고, 오히려 전통적 성역할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남성이 실제로 돌봄노동에 동참하게 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도 있다.<sup>80)</sup>

그러나 기본소득이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 기본소득은 기존에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던 여성들에게 지지대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 기본소득이 근로 요건 없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므로 필연적으로 돌봄에 대한 가치평가를 향상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임금노동이나 가사노동 중 어느 것을 택했는지와 무관하게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무급의 가사노동, 혹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유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던 여성은 기본소득에 힘입어 열악하고 취약한 노동조건을 거부하는 것

78) Lourdes Beneria, “Globalization, Women’s Work and Care Needs: The Urgency of Reconciliation Policies”, 88 *North Carolina Law Review* 1501 (2010)의 논의 참조.

79) 위 내용의 일부는 이철수·이다혜, 위의 논문(2017), 167-168면의 논의에 기초한 것임.

80) Sara Cantillon & Caitlin McLean, “Basic income guarantee: The gender impact within households”, 43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97 (2016) 등. 이러한 견해에 대해 김교성 외(2017)에서는 기본소득이 ‘마미트랙’을 공고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본소득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기본소득이 남녀 동일임금이나 보편적 보육처럼 젠더평등 구현하는 여러 제도 중 하나로 실현된다면, 여성 개인의 사회권을 확대하고 젠더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김교성 외, 위의 책, 164면.

이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sup>81)</sup> 그렇다면, 임금노동을 훨씬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자만이 가치 있는 시민으로 대우받고,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은 2등 시민처럼 취급받던 부정의의 문제가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시정될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sup>82)</sup>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 요건 없이 주어진다는 점에 불편함을 표하며 노동하지 않는 자가 기본소득을 받는 것을 일종의 무임승차로 여긴다. 그런데 무임승차의 문제는 임금노동보다는 돌봄노동 영역에서 더 고질적이다. 오히려 기존에 임금노동만 수행하고 돌봄노동에서는 빠져 있던 남성이 여성의 돌봄노동에 무임승차했다는 점이 정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sup>83)</sup> 기본소득은 여성의 지위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돌봄노동을 더 이상 그림자 노동이 아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으로 변혁시키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84)</sup>

다만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하나만으로 젠더 불평등을 일소하는 해법이 될 수는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답습되고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및 인식이 남아있다면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젠더 정의가 구현될 수 없다. 권정임(2013)은 기본소득은 “젠더 정의의 실현을 위한 최소요건”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 도입되는지에 따라 현재의 불평등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도, 혹은 보다 젠더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sup>85)</sup>

기본소득은 젠더 평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여성의 노동권 향상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근로권 관련 법제도는 ‘임금노동권’만을 주로 보장하고 있었다면, 기본소득을 전제한 새로운 근로권은 ‘돌봄노동권’ 또한

81)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불안정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재량시간이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이지은,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청년연구자네트워크 세션(2018).

82)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0권 제4호(2013), 116면.

83) 파레이스, 위의 책, 249면의 논의 참조.

84)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기본소득이 젠더 평등에 기여하려면, 기본소득이 돌봄노동의 경제적 ‘대가’로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본소득의 금액과 돌봄노동의 가치가 동일시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만일 기본소득의 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면, 가정주부의 돌봄노동의 가치는 그 액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85) 권정임, 위의 논문, 136면.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와 양육, 간병 등 돌봄노동은 힘들고 번거로운 의무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한편으로 자기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을 돌볼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일종의 권리이기도 하다.<sup>86)</sup> 일터에서의 임금노동을 벗어나 가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활동을 권리로 인식한다면, 기본소득은 이러한 돌봄노동권을 보완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견해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전통적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하던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증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통해 임금노동에서 적절한 자유의 여지가 생겨야 비로소 남녀 모두 돌봄노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돌봄노동의 의무뿐 아니라 권리적 성격도 간과할 수 없으며, 기본소득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관계법령은 돌봄노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의 평등한 분배 및 사회화를 촉진하는 기존의 다른 정책, 예컨대 선택적 시간근무제, 남성 육아휴직의 적극적 시행 등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2. 기본소득과 디지털 노동: 4차 산업혁명과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재검토

기본소득은 근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법의 기본 전제인 ‘종속 노동’(subordinated labour)에 대한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이 점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그로 인해 확산되는 디지털 노동자들의 근로권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1)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관련성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는 비관론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산업구조변화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으며,<sup>87)</sup>

86) 돌봄노동은 그 관계적, 인격적 특성 때문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적 맥락에서 수행되느냐에 따라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다. 돌봄노동이 하기 싫은 의무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돌봄이 하찮게 여겨지고, 돌봄을 받는 개인들 및 사회로부터 평가절하되기 때문이다.

87) Frey, C.B. & Osborne, M.A.,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i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114 (2017), pp. 254-280 외 다수.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인 Elon Musk는 “일은 로봇이 하고, 월급은 국가가 주는 시대”가 온다는 발언을 남겨서 ‘4차산업혁명-대량실업-기본소득’의 연결고리가 필연적일 것 같은 인상을 준 바 있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노동을 통해 임금소득을 확보할 여지가 적어져서 기존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이 의미 없게 되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다.<sup>88)</sup> 그리고 기존의 법제도를 부정하는 바로 이러한 식의 주장을 경계하는 맥락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도 발견된다.<sup>89)</sup>

그런데 기술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직종이 창출되기도 하고, 자동화가 활발한 직종에서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증가하며 평형 상태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sup>90)</sup> 과거 산업혁명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인류는 시대의 필요를 반영하는 정치적 결단과 법제도적 선택을 통해 일자리를 회복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sup>91)</sup>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일정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현황과는 별개로 기존의 노동권 및 관련 법제도가 필요없게 된다는 식의 무용론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기본소득의 도입과 노동 종말론 사이에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 2) 플랫폼 노동과 기본소득

그렇다면 노동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이 의미를 갖는 영역은 어디일까?

<sup>88)</sup>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기본소득 도입을 이와 연결짓는 담론에 대한 실증 연구로 김수완·안상훈·김영미, “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4호(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참조.

<sup>89)</sup> Ewan McGaughey (2017) 등.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보다는 현존하는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의 개념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의 관념만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그 자리에 시장이 들어올 위험성을 경계하는 등의 반론이다.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빠레이스 등(2017)은 기본소득 제안은 꼭 필요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제거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현재의 사회보장과 기본소득이 상보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sup>90)</sup> 김석관, “두 개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선택”, 『한국형 노동 4.0. 포럼』 발표자료(2018).

<sup>91)</sup>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노동 4.0 녹서(2016); 이철수 외,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 노동 4.0”,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2018).

기술혁신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 즉 디지털 기술과 앱에 기반한 플랫폼 노동(platform work), 클라우드워크(crowdwork) 등의 현상은 기본소득 도입의 구체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재 노동법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와도 관련성을 갖는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등의 기술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노무제공자)와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중개되므로, 노무제공자가 분명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하고 소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사용자성, 혹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시간이 비교적 유동적인 점 등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근로자상과 차이가 있다.<sup>92)</sup> 이들은 현재 노동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비교법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 판단 여부는 사용자에 의한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sup>93)</sup>

그러나 플랫폼 노동에서는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근로자성 판단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 운전자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법령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sup>94)</sup> 우리나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득을 얻는 음

92) 디지털 혹은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는 자들의 노동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로, 이다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의 쟁점: 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42호(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7)의 논의 참조.

93)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식 배달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sup>95)</sup>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대응하여 유사근로자, 독립적 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제3의 범주를 만들어 규율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속’을 기초로 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96)</sup>

기본소득은 이 지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노동 요구 없이 주어지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만 노동법의 보호 범위로 포섭하는 현재의 근로자 개념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자본소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산가가 아닌 한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는 노동소득, 즉 임금을 의존하여 생계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노동과 소득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므로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주로 집중하여 근로자를 정의하는 방식의 타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근로자 개념을 다르게, 혹은 더 넓게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sup>97)</sup> 법으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의 범주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기본소득은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입법론적 대응 방식보다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 3. 기본소득, 시간주권 그리고 근로선택권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노동에서의 실질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점으로 ‘시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임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비교적 강했지만, 현재의 청년 세대는 인격적 존중과 일과 삶 양립(work-life

94) 미국에서 전개된 우버 운전자에 대한 법적 논쟁과 판결례에 대해서는 이다혜, 위의 논문, 420면 이하의 논의 참조.

9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179 판결. 동 판결에 대한 분석으로 이다혜,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179 판결”, **노동법학**, 제67호(2018) 참조.

96) 이다혜, 위의 논문(2017), 433-434면의 논의 참조.

97) 같은 취지로 서정희·백승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제56호(2017) 참조.



balance)이 가능한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계속적으로 최장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sup>98)</sup> 최근 노사간 입장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 단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근로 여부와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원이 확보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다소의 여유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양질의 노동(decent work)에 기여함은 물론이지만, 일과 삶의 조화를 증진시킴으로 인해 일터 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유하는 것과 직결된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노동 4.0』<sup>99)</sup> 도서 및 백서에서는 이를 “시간주권”(zeitsouveränitä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sup>99)</sup> 기본소득은 노동권으로서의 시간주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시간에 대한 권리’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sup>100)</sup>

유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원치 않는 종류의 노동이라 할지라도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억지로 감내하지 않고, 근로자가 양질의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로선택권’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는 이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헌법 제15조), 임금노동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의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만을 갖는다.<sup>101)</sup> 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이 보장되는 근로선택권은 단순히 국가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물질적, 경제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각 개인이 양질의 노동이 아닌 ‘나쁜 노동’을 거부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98) 2016년 기준 한국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9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했는데, 해당연도 OECD 회원국 연간 노동시간 전체 평균은 1,763시간이었으므로 한국이 압도적인 장시간 노동사회임을 알 수 있다.

99)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노동 4.0 도서(2016)**.

100) 스탠딩, 위의 책, 211면; 이지은, 위의 글(2018)에서도 기본소득이 여성의 시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101)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갖는 경제질서와 연관지어 이해되며, 직업을 선택할 ‘기회’에 초점을 맞춘 자유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399-400면.

## V. 결론: 기본소득 - ‘정의’에서 ‘법’으로

“현재의 과학은 다음 세대에는 상식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정의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 세대에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sup>102)</sup>

- H.S. Foxwell, from “Introduction” in A. Menger,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Macmillan Press, 1899

법학자, 그중에서도 마치 법철학자의 말처럼 들리는 이 문구는 놀랍게도 법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의 문장이다. 이 말을 남긴 영국의 경제학자 H.S. Foxwell은 본론에서 언급한 오스트리아 법학자 Menger의 저서 『노동수익권』을 최초로 영미권에 소개하는데,<sup>103)</sup> 위 문장은 그가 저술한 1899년의 영문판 서문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법학자의 저서에 대해 경제학자가 서문을 쓰며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 내지는 ‘시장 전체주의’가 우세한 오늘날에는 다소 신선하고 낯설게 느껴지며,<sup>104)</sup> 본래 경제학의 출발은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sup>105)</sup>

현재 정의로 여겨지는 것이 다음 세대에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Foxwell의 진단은 법의 역사에서 보편적인 경로이자 정확한 통찰이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수익권’의 개념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을 통해 창출한 모든 가치를 전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수익권은 현실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와 양립하기 어렵기에 하나의 정의 관념으로 남겨 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근로권과 생존권 개념이 제시되었다. 당시는 노동법이라는 독자적 분야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실정법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권과 생존권이라는 법적 방안을 생각해

102) “It has been said that the science of one age is the common sense of the next. It might with equal truth be said that the equity of one age becomes the law of the next.”

103) Anton Menger, *Das Recht auf den vollen Arbeitsertrag in geschichtlicher Darstellung* (1886); 영문판은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Labour's Claim to the Whole Product of Industry*, Macmillan Press (1899). 본 영문판은 M.E.Tanner가 번역하고,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경제학과 교수였던 H.S.Foxwell이 총 110쪽에 달하는 분량의 영문판 서문을 남겼다. 본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로 이철수·이다혜, 위의 글(주 70), 133면 이하 참조.

104) 알랭 쉬피오(박제성 역),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한국노동연구원(2012).

105) 토마 피케티(장경덕 역), *21세기 자본*, 글항아리(2014), 46-47면.

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바이마르 헌법에 반영되고 이를 계기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헌정화 및 입법화된 것이다. 노동법의 역사는 ‘미완의 정의’를 ‘완성된 법’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한 세기 전에 근로권이 형성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지금의 기본소득론과 견주어 보면, 기본소득은 Foxwell이 말하는 ‘현재의(미완의) 정의’인 듯하다. 혹자는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상황을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라며 1848년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에 비유하기도 한다.<sup>106)</sup> 기본소득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법과 제도로 현실화될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정치로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Menger는 공산주의 논쟁과 실험이 활발했던 19세기 당시의 정의 관념을 노동수익권이라는 법적 계기로 포착하여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노동권의 법적 기초를 놓았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소득은 ‘떠도는 유령’에 그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헌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권리와 제도로 구체화된 기본소득을 볼 수 있게 될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기본소득은 19세기 당시의 노동수익권에 상응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수익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기에 하나의 이상으로 남았고, 대신 근로권과 생존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법적으로 구체화되었다. 다소 거칠게 단순화하면 노동수익권이 ‘이상’이었다면 근로권 및 생존권은 그 실현 수단이 되었고, 노동수익권이 ‘질문’이었다면 오늘날의 노동권은 그에 대한 ‘답’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은 21세기 노동 현실의 부정의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지, ‘질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론을 통해 드러나는 현재의 노동세계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 기본소득은 바로 우리의 노동에 ‘자유’의 관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여기에서의 자유는 과거 신자유주의에서와 같이 법적 보호를 하나의 비용으로만 여겨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와 동일시하는 형식적, 명목적 자유가 아니라,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종속되지 않고 그 인격과 창의성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해방적 자유’를 의미할 것이다.<sup>107)</sup>

<sup>106)</sup> Karl Marx & Frederick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1848). “A spectre is haunting Europe—the spectre of communism.”

<sup>107)</sup> 이러한 해방적 자유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념과도 맞닿아 있다. 모리치오 비롤리(김경희·김동규 역), *공화주의, 인간사랑*(2006)의 논의 참조.

지금까지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제인권규범 및 우리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근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완전고용이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제적 목표에 대한 집착이 도리어 노동권을 제약하는 본말이 전도된 현상을 야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법은 형식적인 근로의 기회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본소득은 금전이라는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토대를 제공하기에 노동의 전반적인 교섭력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분배 재편을 통해 젠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 일터에서의 시간주권과 근로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모든 개인이 노동에 있어 실질적 자유를 향유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이념에 부합함은 물론, 노동권의 본래적 취지와 인간다운 생활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08)</sup>

Foxwell의 통찰처럼 과연 ‘현재의 정의’가 ‘다음 세대의 법’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세대의 법’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투고일 2019. 1. 21	심사완료일 2019. 2. 18	게재확정일 2019. 2. 22
-----------------	-------------------	-------------------

108) 김복기, “남북한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시론(試論) - 초기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2017), 55-56면. 본 논문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에 대한 적극적 생활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지역 기본소득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가이 스탠딩(김태호 역),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박종철출판사(2014).  
 \_\_\_\_\_(안효상 역),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비(2018).
- 강남훈·곽노완 외,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박종철출판사(2014).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한학문화(2006).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5).
- 권정임,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4호(2013).
- 금민, 기본소득 헌법개정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2017).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2017).
- 김복기, “남북한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시론(試論) - 초기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제6권 제2호(2017).
- 김석관, 두 개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선택, 「한국형 노동 4.0 포럼」 발표자료 (2018).
- 김수환·안상훈·김영미, “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4호(한국사회보장학회, 2018).
- 낸시 프레이저(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2010).
- 노호창,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 **헌법논총**, 제28집(2017).
- 데이비드 프레인(장상미 역), **일하지 않을 권리: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반론**, 동녘 (2017).
-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노동 4.0** 녹서(2016).
-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김현지·이영주 역), **집안의 노동자: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 갈무리(2017).
- 모리치오 비롤리(김경희·김동규 역), **공화주의, 인간사랑**(2006).
- 문준혁,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제44호(2018).

- 박제성, **하청노동론: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 도서출판 퍼플(2018).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2016).
- 서정희,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월간 복지동향**, 제221호(2017).
- 서정희·백승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 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제56호(2017).
- 서정희·조광자,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진보평론**, 제45호(2010).
- 알랭 쉬피오(박제성 역),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한국노동연구원(2012).
- 양승광,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노동법연구**, 제44호(2018).
- 요시미 키쿠치, “Social Polatizaion and Social Security Law in Japan”,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 이다혜,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 노동 4.0』,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2018).
- \_\_\_\_\_,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의 쟁점: 미국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42호(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7).
- \_\_\_\_\_, “국제규범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북한에 대한 적용”,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연구**, 제6권(2017).
- \_\_\_\_\_,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179 판결”, **노동법학**, 제67호(한국노동법학회, 2018).
- \_\_\_\_\_, “비스마르크와의 기나긴 작별? -유럽 복지개혁의 정치학, 그리고 한국 사회보장의 현주소에 대한 단상”, **사회보장법연구**, 제2호(서울대 사회보장법 연구회, 2012).
- \_\_\_\_\_, **시민권과 이주노동: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 이반 일리치(노승영 역), **그림자 노동**, 사월의책(2015).
- 이주영,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2호(2016).
- 이지은,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청년연구자네트워크 세션**(2018).

- 이철수 외,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 노동 4.0,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2018).
- 이철수, 노동법의 신화 벗기기: 아! 경영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공개세미나 발표문 (2017).
- 이철수·이다혜, “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 –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과 19세기 사회적 기본권의 태동–”,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2012).
- \_\_\_\_\_,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2017).
- 임종률, **노동법** [제15판], 박영사(2017).
- 장지연,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제11권 제2호 (2011).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채(2017).
- 전병유, **한국의 불평등 2016**, 페이퍼로드(2016).
- 조셉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열린책들(2013).
- 차진아, “헌법상 근로권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와 대안의 모색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2010).
- 클라우스 슈밥(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2016).
- 토마 피케티(장경덕 역), **21세기 자본**, 글항아리(2014).
- 팀 던럽, **노동 없는 미래**, 비즈니스맵(2016).
-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홍기빈 역),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위한 거대한 전환**, 흐름출판(2017).
- 필리페 판 파레이스(조현진 역),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후마니타스(2016).
- 한나 아렌트(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1996).
- 한인상,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 제36호(2014).
- Arendt, H., *The Human Condition*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Beneria, L., “Globalization, Women’s Work and Care Needs: The Urgency of Reconciliation Policies”, 88 *North Carolina Law Review* 1501 (2010).
- Bueno, N., “Introduction to the Human Economy: From the Right to Work to Freedom from Work”, 33(4)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2018).

- Cantillon, S. & McLean, C., “Basic income guarantee: The gender impact within households”, 43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97 (2016).
- Davidov, G. & Langille, B. (eds.), *The Idea of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Freeman, R. B. & Rogers, Joel, *What Workers Want*, Ithaca : ILR Press :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 Frey, C.B. & Osborne, M.A.,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i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114 (2017).
- Fudge, J., “Labour as a Fictive Commodity: Radically Reconceptualizing Labour Law”, in G. Davidov & B. Langille (eds.), *The Idea of Labou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Fudge, J. & Strauss, K., *Temporary Work, Agencies and Unfree Labour: Insecurity in the New World of Work*, Routledge (2013).
- Mantouvalou, V. (ed.), *The Right to Work: Leg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Hart Publishing (2015).
- Marx, K. & Engels, F.,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1848).
- McGaughey, E., “Will Robots Automate Your Job Away? Full Employment, Basic Income, and Economic Democracy”, Centre for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Working Paper no. 496 (2017).
- Menger, A., *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Labor's Claim To The Whole Product Of Industry*, McMillan Press (1899).
- Offe, C., “Basic Income and the Labour Contract”, *Basic Income Studies* Vol. 3, Issue 1 (2008).
- Stiglitz, J., “The Global Crisis, Social Protection and Job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8 (2009).
- Weil, D., *The Fissured Workplace: Why Work Became So Bad for So Many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i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 Widerquist, K., “What (if anything) can we learn from the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 *Journal of Socio-Economics* 34(1) (2005).



<Abstract>

## Basic Income and Labour Law Transformed: How Basic Income can Reinforce Rights at Work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Lee, Da Hea\*

As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such as AI, automation and big data technology sweeps across the economy and industry, many studies suggest a rather gloomy prospect that a ‘workless future’ might advent as a result of technology replacement of human employment. On the face of this change, the universal basic income (UBI), a periodic cash payment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is be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system that guarantees livelihood for all citizens.

Some criticizes UBI on the basis that, given the fact that it is given unconditionally without work requirement, UBI might weaken existing labour rights mechanisms; that people would not choose to work if they are given unconditional UBI, which will render labour rights meaningless.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UBI does not interfere with labour rights; on the contrary, UBI poses a strong potential to reinforce existing labour rights system in a way that it could correspond more properly to the changing world of work.

First, UBI enables a critical review of the ‘right to work’ concept which has been built on a Keynesian faith in full employment. Second, by granting an income that is unrelated to work, UBI could possibly correct the bias toward wage-labour in our existing labour system and result in reappraisal of care work. UBI could thus contribute to relieving gender inequality and raise women’s status at work. Lastly, UBI is a conception that can possibly fit more properly to the new forms of work that is digitalized—by granting UBI, platform workers, who are not currently being

---

\* Lecturer of law,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tected by existing employee protection scheme, might be able to enjoy a better protection of their work. In light of such analysi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UBI is a plan that reinforces rights at work and decent living in a transformative way.

Keywords: Universal basic income, Work 4.0, Digital transformation, Right to Work, Gig economy, Platform work, Care work